

재정보증서 관련 매뉴얼 (워킹홀리데이 비자)

1.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의 소득이 연 4,000,000 원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에 4,000,000 원 이상의 잔고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위 두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재정보증서”를 통해 이를 증빙가능합니다.

▶ 금액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명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정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범위

재정보증인은 부모님(두분 혹은 한분) 혹은 **3촌이내의 인척** 중 서류상 증빙 가능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경우에만 재정보증인이 두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정보증서에는 각기 해당되는 부분만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아버님 소득금액, 어머님 잔고잔액 기입

* 위 ‘소득’에는 금융·연금·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비자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의 관계 증명

비자신청자는 재정보증인과의 친인척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두개 이상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형제가 재정보증인이 되는 경우, 1)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3) 재정보증인이 되려는 부모님의 형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따로 준비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가족/혼인관계 증명서는 국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득증명서 서류 예시

한국에서 근무 중인 경우 비자신청자는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소득증명서)로 '소득금액증명원(Certificate of Income)'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문으로 발급 후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발급)

[근로소득자]

a.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5 월 1 일 이후에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예) 2024 년도에 비자신청 진행 시 2023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5 월 1 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예) 2024 년도에 비자신청 진행 시 2022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 이외: 종합소득세 신고자]

a.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7 월 이후에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예) 2024 년도에 비자신청 진행 시 2023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7 월 이전에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예) 2024 년도에 비자신청 진행 시 2022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근무 중인 경우 해당 국가의 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스페인어로 번역공증, 해당국가 아포스티유 발급 필수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엔 해당 국가 주재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인증받을 것)

[연금수령자]

아래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소득증명서로 '연금수령내역서(certificate of retirement benefits)' 제출 가능
(공문서로 취급되는 경우 문서발급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영문 원본을 스페인어로 번역·공증 후 문서발급국 아포스티유 발급받아 제출 ※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서발급국에서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할 것)

a. 소득금액증명서 혹은 연금수령내역서

▶ 2001 년 1 월 1 일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예) 2024 년도에 비자신청 진행 시 2023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연금소득)

▶ 2000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가입,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 연금수령내역서 제출

주한 스페인 대사관 영사과 (Sección Consular, Embajada de España en Corea del Sur)

재정보증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1. 소득과 잔고증명을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명 가능한가요?

- 재정보증인이 부모님 두분일 경우에만 소득과 잔고증명을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재정보증서_부모님 두 분이 재정보증인일 경우' 파일 다운로드 후 소득 부분에 아버지 소득 기입, 잔고 부분에 어머니 잔고 기입

- 이 외의 경우에는 소득, 잔고증명, 거래내역서 **모두 한 사람의 명**의여야 합니다.

예) 소득은 아버지, 잔고와 거래내역서는 신청자 명의로 증빙 불가

Q2. 소득, 잔고잔액을 원화로 기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원화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 경우 해당 금액 옆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Depósitos Bancarios: \$19590 (₩25,000,000)

▶ 이때 환율은 재정보증서를 작성한 날의 구글 원달러/유로원 환율로 작성